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8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[한은경 의원 대표발의]

1. 제안이유

- 예술인의 문화·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오산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등을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의 설치 및 지원과 그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오산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등을 위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예술촌의 시설은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, 체험장, 그 밖의 부대시설 등으로 공방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예술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예술촌 입주작가의 선정기준과 입주기간 등을 규정함(안 제5조).

- 마. 입주작가의 역할과 입주작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바. 예술촌을 대표하고 예술촌의 총괄관리를 위한 오산창작예술촌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- 사. 예술촌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.
- 아. 예술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0년 11월 23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한은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424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1월 17일
 발의의원 : 한은경, 김명철 의원
 찬성의원 : 장인수, 이상복, 성길용,
 이성혁 의원

□ 제안이유

- 예술인의 문화·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오산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등을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의 설치 및 지원과 그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오산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등을 위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예술촌의 시설은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, 체험장, 그 밖의 부대시설 등으로 공방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예술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예술촌 입주작가의 선정기준과 입주기간 등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입주작가의 역할과 입주작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바. 예술촌을 대표하고 예술촌의 총괄관리를 위한 오산창작예술촌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- 사. 예술촌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.
- 아. 예술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 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 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,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5호, 제104조

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의 문화·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공간 설치 및 지원과 그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오산창작예술촌 설치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오산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등을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(이하 “예술촌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(시설) ① 예술촌의 시설은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, 체험장,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방의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.

② 예술촌의 시설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기능) 예술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주작가의 문화·예술 창작활동 지원
2.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문화·예술 창작 체험교실 운영
3. 문화·예술 행사 및 교육·전시
4. 그 밖에 지역 문화·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입주작가 선정 등) ① 시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예술촌 입주작가(이하 “입주작가”라 한다)를 선정해 배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주작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.

② 입주작가의 자격기준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이 조례에 따라 예술촌에 입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
③ 입주작가의 예술촌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

④ 입주작가의 선발·배치 절차 및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6조(입주작가의 역할) 예술촌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문화예술관련 시민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2.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
3. 소규모 전시공간 제공
4. 국내·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

제7조(입주작가 지원) ① 시장은 입주작가에게 작업실을 배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작가지원비의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.

제8조(오산창작예술촌장) ① 시장은 예술촌을 대표하고 예술촌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장(이하 “촌장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술촌의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
2. 예술촌의 연간 행사계획 및 홍보 마케팅 수립
3. 입주작가 관리 및 예술촌 시설·물품 등의 관리
4.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활동 및 안전점검 실시
5. 그 밖에 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운영 위탁) ① 예술촌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촌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

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) 시장은 예술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】

관계법령 발췌서

「문화예술진흥법」

-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「지역문화진흥법」

- 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

- 제2조(생활문화시설의 범위) 「지역문화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.

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
2.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
4.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

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